

제 6 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53 2019서울조정54 정정청구

경쟁 업체의 허위제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원 기사는 물론, 기자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기사에 대해서도 열람·검색을 차단해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무자격 관광가이드의 인솔 하에 박물관을 관람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쫓겨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 현지 여행사의 상호와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업체는 박물관 규정에 따라 사전예약을 거쳐 공인가이드와 함께 투어하고 있고 박물관에서 쫓겨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제보자의 허위신고에 따라 벌어진 소동에 관한 동영상을 마치 관람객들이 실제 쫓겨난 것처럼 편집 사용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정정보도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를 비롯해 소속 기자 개인 블로그에 전재한 기사까지 열람 및 검색 차단하여 이 사건 조정은 취하됐다.

■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54 2019서울조정1678 정정청구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내용이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공식 석상에서 B언론사 기자가 정부부처 사무관에게 폭언을 하고 물의를 빚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무관과 기자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기자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해당 사건은 사무관과 기자 간 직접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기자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마치 사무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 신청인 부처와 해당 사무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A부처 명의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해당 사건은 C사무관과 B언론사 기자 간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언론사 기자의 일방적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다.
- A부처와 기자단 간 공식 회견 장소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으로 인해 C사무관 및 A부처는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부처 소속 C사무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보도가 신청인 부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정대상기사로 인해 신청인 부처가 법령상의 과제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인 부처를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조정대상보도

A부처 기자단이 출입처 공무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B언론사 기자 징계를 위해 오는 8일 긴급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A부처 간사단은 지난 4일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대변인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개

기자가 C사무관에게 폭언 등을 가하는 물의를 빚었다.”며 출입 기자 징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안건을 다루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출입기자 품위 손상과 기자단 명예 실추 등이 사유다.[중략]

사건 발단은 다음과 같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A부처 공무원과 기자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A부처 소속 C사무관에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지나치게 소란스럽고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욕설을 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이어질수록 기자와 사무관은 뜻이 맞지 않았고 기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기자가 C씨에게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며 자리를 떠났다.

해당 기자가 이 상황을 말리는 A부처 기자단 간사에게도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이 목격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당시 현장에 있는 목격자는 “그 기자가 돌연 고성을 썩 질렀다. 나가면서 심한 욕설을 했다. 모두 당황해 몇 초간 멍했다.”고 설명했다.[후략]



사례 55 2019서울조정1704, 2019서울조정1705, 2019서울조정1706, 2019서울조정1707, 2019서울조정1708(병합) 각 추후청구

과거 제품회수 명령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제품회수 행정명령 취소 판결에 따른 추후 보도를 청구했으나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인 '형사상의 조치'에 관한 사안이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 5개 언론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현미유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제품명과 제조회사 명칭을 각 공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 업체는 법원 재판 결과 위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정돼 행정명령이 취소됐으므로 취소 처분에 관한 사실이 보도돼야 한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법원 재판결과, B사는 위 내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취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청구권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신청인 업체는 행정처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형사절차상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요건을 미비한 청구라며 각하했다.

그러나 결정서를 통해, 형사절차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기속력 있는 판결 등으로 과거 보도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새로운 보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입법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조정대상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미유 제품과 빵류 제품 1곳에서 각각 벤조피렌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A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업체가 제조·판매한 'C현미유'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2.0 $\mu\text{g}/\text{kg}$ 이하) 초과 검출(2.5 $\mu\text{g}/\text{kg}$) 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후략]



사례 56 2019경기조정183·184·185 정정·반론·손배청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명을 공개한 보도에 대해 언론사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언론사 계정의 유튜브 및 SNS에서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향후 발견되는 기사 복제글에 대해서도 삭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세 명의 중학생이 상급생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인근 산으로 데려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재학 중인 학교명과 해당 학생들의 이니셜을 보도했다.

■ 신청취지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인 신청인은 자녀가 ‘피해’ 초등학생의 상습적인 놀림에 괴로워하다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시도했을 뿐 실제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해 보도한 내용이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요지

- 산이 아니라 인근 식당 근처에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폭력도 발생하지 않았다.
- 그동안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아무 이유 없이 반말과 놀림을 당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문자 메시지로 하급생에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했고, 보도 이후 가해 학생 측 부모의 항의로 학생들을 익명처리 했으며, 가해 학생들 측의 반론을 게재하고자 했으나 부모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소년법상 조사·심리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실을 수 없게 한 취지를 고려해 피신청인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뿐 아니라 피신청인 계정의 유튜브 및 SNS에 전재된 기사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신청인이 향후 위 기사의 복제물을 발견할 경우 피신청인이 삭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 피신청인 계정의 유튜브, SNS에 전재된 조정대상기사가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의 복제물을 발견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즉시 URL을 전송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복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례 57 2019전북조정47·48/49·50 각 정정·손배청구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직자를 비판한 사설에 대해 과도한 의견표명임을 인정하면서도 신청인이 공인인 점을 고려해 당사자 간 화해를 권유, 심리 중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사설을 통해 지역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A교육감이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범법자가 됐고, 전과자로서 지역 교육계를 이끌어갈 신뢰를 상실했다고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 신청취지

지역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신청인의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외국대학에 입학한 신청인의 자녀를 마치 편법을 사용해 진학한 것처럼 보도하는 등 신청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사설 대부분의 내용이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 신청인이 소송을 남발해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청인이 신뢰를 상실했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다.
- 사실 확인 없이 '전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육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지역 국회의원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교적 표현의 자유가 넓게 허용되는 사설 형식을 통해 공직자의 행보를 비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지위 상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전과자', '범법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도한 의견표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신청인이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공인임을 고려할 때 비판을 감당할 범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보도문을 게재하는 대신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했고, 심리 중 화해에 이르러 조정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지도자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역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A교육감은 전과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급기야 교육계 원로가 나서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징계를 받는 등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할 교육감은 법률위반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B국회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A교육감은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A교육감은 C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거부되는 수모도 겪었다. 앞서 그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권남용죄로 700만 원 벌금형도 받았다.

B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 8,000여만 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모두 국민혈세라고 한다. C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막상 A교육감의 아들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의 D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는 현역 의원의 비판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항변해보라.



사례 58 2019서울조정1929 · 1930 반론 · 손해청구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실 보도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향후 활동에 관한 PR보도를 게재하고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교향악단이 2주 간 무단결근한 B 부지휘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했고, 부지휘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교향악단 측의 입장에 관한 보도에 이어, 교향악단의 직권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부지휘자의 입장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 신청취지

교향악단 측의 의견만을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보도 이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며 반론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A교향악단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지난 6월 직권면직 한 B 전 부지휘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
- B 전 부지휘자는 A교향악단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조정결과

심리 중 신청인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신청취지에 같음해 하반기에 예정된 국외활동 소식을 보도해주길 원한다고 밝힌 데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한 PR보도를 게재해 이 사건 조정은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A교향악단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B 부지휘자를 직권면직했다.

A교향악단은 본지와 의 통화에서 B 부지휘자를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A교향악단 관계자는 “B 부지휘자가 연주회를 포함해 2주가량 무단결근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들어보려 했지만 인사위원회에도 불참했다.”고 면직 사유를 설명했다.

B 부지휘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증거부터 가져오라는 말에 환멸을 느낀다.”며 인사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후략]

보도 2

지난 달 A교향악단에서 직권면직된 B 전 부지휘자가 “부당한 조치”라며 부당하고 구제 신청과 관계자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B 전 부지휘자는 A교향악단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어겼다고 31일 주장했다.

그는 “6월 7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은 즉시 소명 자료를 보냈지만 6월 12일 당사자 없이 인사위원회가 개최됐고, 6월 14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또 A교향악단이 직권면직 사유로 든 무단결근에 대해 “결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적은 메시지를 사무국 경영관리팀장과 단원 1인에게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 근거로 그는 이들에게 보낸 문자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권유해 사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를 받았다.”면서 “권고사직과 직권면직은 다르다.”고 강조했다.[후략]



사례 59 2019서울조정2092 · 2093 정정 · 손해청구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된 기고문을 동의 없이 게재한 데 대해 원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단체와의 공동 기획으로 '대학 교육'에 관한 기고문을 4차례 연재했고, 그 중 신청인의 기고문을 3회 차 연재물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게재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기고문을 게재하기 전 피신청인과 수차례 수정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최종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기고문을 게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이 임의로 수정해 본래 취지가 훼손된 기고문을 동의 없이 게재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 기고문으로 정정하여 게재하는 것과 함께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 기고문으로 정정하여 게재하는 것에 관해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이른바 '조국 대전'에 던져진 적폐 척결 과제 중에는 교육 개혁의 과제도 있다. 조국 딸이 연관된 입시 비리 의혹은 많은 흡수저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한 바 있다. A부처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학생부종합전형 진상 조사를 언급했지만 교육 대물림이 해소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입시 절차를 바꾼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까닭은 대학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중략]

상식적인 대안은 연구 중심의 대학원 대학, 교육중심의 학부대학, 직업 교육 중심의 대학 세 갈래로 나누어 발전시키는 것밖에 없다. 지금처럼 명문대라도 학부생 장사만 하고, 대학원은 대학마다 설치돼 있고, 4년제 대학들이 앞다퉀 전문대학의 기능학과들을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대학들이 장사에만 열을 올려서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변하기 어렵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여느 때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과 언론, 수구 정치 세력의 연합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흔들려야 한다. 이른바 '조국 대전'에 던져진 적폐 척결 과제 중에는 교육 개혁의 과제도 있다.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수많은 가짜뉴스는 많은 흡수저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자극한 바 있다.[중략]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은 연구 중심의 대학원 대학, 교육 중심의 학부 대학, 직업 교육 중심의 대학 세 갈래로 대학을 나누어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금처럼 명문대라도 학부생 장사만 하고, 대학원은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고, 4년제 대학이 앞다투어 전문대학의 기능학과들을 벤치마킹하는 식이라면 학벌사회에서 일부 대학은 언제나 승자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본보 2019년 10월 10일자 11면에 실린 기고문의 원문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기획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 3번째 칸 이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60 2019서울조정2160 손배청구

은퇴한 운동선수는 더 이상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의사실에 관한 보도에서 성명과 사진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전직 격투기 선수인 A가 후배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A의 성명과 나이 및 사진을 공개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격투기 선수에서 은퇴해 더 이상 공인이 아닌데도 신청인의 성명 및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고, 화급하지 않은 사안인데도 신청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사진 및 실명을 비롯한 위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은퇴했다라도 선수 활동 당시 뛰어난 성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과거 다른 사건에서도 실명으로 보도된 바 있어 공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유명 선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은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중재부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의 실명을 익명처리하고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데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종합격투기 대회 UFC에도 출전했던 전직 유명 격투기 선수가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 A씨(○살)를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후배 선수인 ○살 B씨를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7년 UFC 대회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조정성립 사항

1) 제목

- 기존: UFC 출신 A, 후배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
- 수정: 전 UFC 선수, 후배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

2) 본문 중

“A 씨(○살)”을 “A씨”로, “○살 B 모 씨”를 “B씨”로 수정한다.

3) 자료사진

신청인의 초상을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리게(또는 모자이크) 처리한다.